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3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4 부

판 결

사 건	2018구합2254 지방세 등 환급 거부처분 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9. 3. 8.
판 결 선 고	2019. 3. 2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12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9,737,090원과 공탁금 이자 163,200원 합계 9,900,29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3

가. 피고는 2008. 11. 28. 그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상당[1]을 징수하기 위하여 [redacted] [redacted]구 B 토지 157㎡ 중 원고 소유 지분 157분의 97.27(이하 '이 사건 압류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압류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2. 4. 8. 그 당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9,298,6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금제2850호로 공탁한 공탁금 30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공탁금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, 이후 같은 해 11. 15. 증가된 중가산금이 포함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9,737,0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.

다. 한편,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2. 11. 28.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였으며, 위 압류해제조서 하단 부분에는 '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"전액납부"에 의하여 2012. 11. 28.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.'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.

라. 그 후 피고는 2016. 4. 28. 2012. 11. 15.자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9,900,290원(= 이 사건 공탁금 2차 압류 당시 지방세 체납액 9,737,090원 + 공탁금 이자 163,200원, 이하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을 추심하여 그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6. 12. 22. 피고에게 '피고가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이후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추심하여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'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추심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.

1) 기록상 2008. 11. 28. 당시 원고의 정확한 지방세 체납액은 확인되지 않는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3

바. 그러자 피고는 2016. 12. 27. 원고에게 '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그 해제의 원인으로 "전액납부"가 기재된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상 오류에 불과하며, 실제 원고는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추심하여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환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.'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었다(이하 위와 같은 회신을 편의상 '이 사건 지방세 환급거부 결정'이라 한다).

사.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 환급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2017. 2. 16. 이의신청을 거쳐 2017. 7. 24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7. 11. 29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12, 13, 16 내지 18, 3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지방세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,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'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3

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,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, 그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, 위 지방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2016. 12. 27.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이 사건 지방세 환급거부 결정의 방식을 통하여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가지는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.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3

판사 한현희

판사 박영순